

## 4차산업혁명이 바꾼 은행권 지도

# 제대로 된 메기 온다… 인터넷은행 大戰 2R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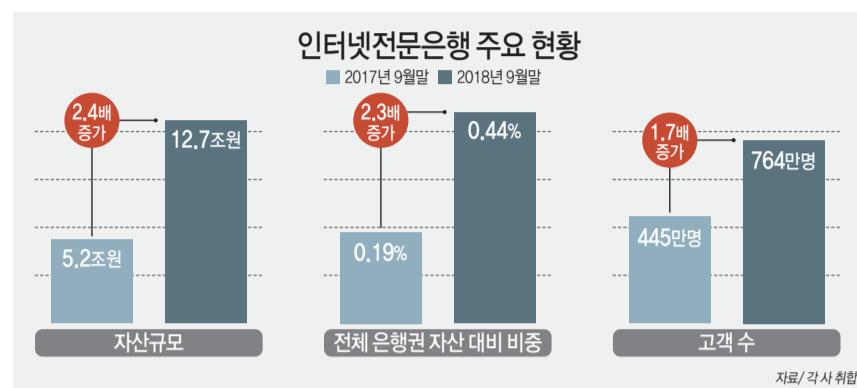
카카오뱅크, 지분율 30%로 확장  
케이뱅크, 최대 34% 지분 가능성

신한銀·NH농협銀 등 진출 검토  
네이버 참여여부 시장의 큰 관심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와 신규 인가 절차 본격화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전 2라운드가 예상된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자본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3, 제4의 인터넷은행도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특히 신규 인터넷은행으로 네이버 등 자본력과 플랫폼, 콘텐츠를 갖춘 대어가 등장한다면 은행권의 판을 흔들 수도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준 4% (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O 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는 17일 발효된다. 앞서 한도(10%) 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가장 먼저 움직일 곳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당초 설립 당시 의도

했던 대로 각각 카카오와 KT가 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

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면 출범 당시 밝혔던 계획대로 신규 대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인기를 위한 절차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는 신규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은행에도 전화 의사를 밝혔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는 인터파크가 재수에 나선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네이버가 뛰어들지 여부다.

인터넷은행 진출로 네이버페이의 사업기반이 확대될 수 있고,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출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진출로 본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은행창구 왜 가나요? 모바일뱅킹 하면 끝나는데”

### 밀레니얼 세대와 금융

#### ① 은행, 꼭 가야하나요?

대면접촉 ‘피곤’ 문자·메신저 선후 대출때 ‘민망’… 인터넷은행 찾아 은행, 오프라인 축소·비대면 강화

#. “통장이요? 은행에 안 가서… 사용 안 한지 꽤 됐어요.” 직장인 이 모씨(29)의 휴대폰엔 은행 및 토스 등 5개의 금융 관련 앱이 깔려 있다. 대출과 적금상품 금리를 비교해 보고, 괜찮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은행에 가지 않은 지는 2년이 넘었다. 월~금 오후 4시에 끝나는 은행 영업시간을 맞출 수 없을 뿐더러 앱으로 은행업무를 보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25억명에 달한다. 2020년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해 경제활동의 주력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가 은행을 떠나고 있다.

정보기술(IT)이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금융활용에 익숙해 은행을 찾을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은행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한 방법을 고심중이다.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뱅킹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예금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1억 4067만명이다. 국민 1명당 2.7개의 은행 디지털뱅킹 서비스에 등록한 셈이다. 이용고객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조회 또는 자금이체 이용 실적이 있는 이용고객은 694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8.2%(1071만명) 올랐다.

특히 디지털뱅킹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뱅킹이다. 모바일뱅킹 실제 이용고객 수는 6601만명으로 9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디지털뱅킹 가속화의 배경엔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 제일 큰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의 대부분이 대면접촉을 ‘피곤한 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26.4%가 ‘면대면 대화나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점포를 찾아 직원과 대화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이전 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득이 낮다는 점도 한몫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마주한 세대는 근로 소득과 자본 소득 둘 중 하나도 쟁기 어려운 세대다. ‘고용절벽’에 시달려 늦은 나이에 취

업 전선을 뚫은 만큼 돈 쌓을 겨를도 없다. 몇 개월 전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직장인 이 모씨(29)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 은행을 찾으면 웬지 모르게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10~20대에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여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전시대에 비해 불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 은행, 찾는 고객 줄자 비대면 디지털화

밀레니얼 세대가 은행을 떠나자 은행의 필요성도 서서히 줄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 채널별 입출금 자금 이체서비스 비중을 살펴보면 인터넷 모바일 비중은 49.4%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반면 은행 창구의 비중은 8.8%다. CD·ATM 비중도 37.8%에서 34.3%로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을 축소하고 채널전략을 꾀하고 있다. 주요 5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시중은행들은 최근 1년새 114개의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몸집을 줄이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한 디지털·비대면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와 수수료를 앞세우고 있는 것. 이에 앞장선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이후 첫 한 달 만에 300만의 고객을 끌어 모았다.

이제 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업체 등 새로운 금융기관에 스스럼이 없는 경향”이라면서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근로자 “협력업체, 난민통제 어려움 없을 것”

## 수탁社에 보복한 원청社, 손해액 3배 배상

» 1면 ‘예멘난민 100명…’서 계속

#### ◆ 관리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러나 조선소가 위치한 해당 군청에서는 난민 100명이 이주한 사실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이탈을 막을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대불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관리공단 대불지사에서도 예멘 난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으로 세 차례 이직을 진행 할 수 있는데 예멘 난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예멘 난민의 경우 초기 단계라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관리감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조선소 현장 근로자는 “여러 협력



지난해 제주에서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체류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 다리고 있다.

업체에서 2~3명 가량 소수로 난민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이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대응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출입국 관리소 난민청 관계자는 “난민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리소가 주관 업무를 하고 있고 따로 통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군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목포(전남)=양성운·정연우 기자 ysw@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공고

수·위탁 납품대금 협의체 7월 도입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일감을 주는 원청기업이 납품대금을 깎기 위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해 손해를 입힐 경우 앞으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또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업 간 수탁거래 또는 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시행된다.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달라지 고 수탁기업이 원활 경우, 중소기업 협동 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행된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넣었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한 물품에 비해 특히 낮은 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정당성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호 기자 bda@